

특수대학원 학칙

- 제 정 : 2001년 1월 30일
- 개 정 : 2019년 12월 14일
- 관리부서 : 특수대학원 교학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28.)
- 제2조(특수대학원의 종류)** 특수대학원에는 [별표1]의 단위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10.23./ 2012.1.11./2017.7.25.)
- 제3조(각 특수대학원의 과정)** 각 특수대학원에는 학위과정으로 석사 학위과정, 비 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두며, 특별과정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7.4.23./ 2017.7.25.)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 제5조(입학시기)** 특수대학원의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 학기 개강 이전으로 한다.
- 제6조(입학 및 편입학자격)** ①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학 전 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각 특수대학원에서 정하는 전형과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기 인정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입학지원절차)** 각 특수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시행하며,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0.28.)
- ② 입학자격이 있는 외국인 및 각종 교류협정에 의한 위탁교육생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
 - ③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12.1.)
-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제10조(전공분야)** 각 특수대학원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 제11조(재입학)** ① 학칙 제16조 2,3호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이 동일전공으로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 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학칙 제9조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하여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길 경우 해당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12./2017.10.28.)

② 재입학 한 학생이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및 제적

제12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9.)

② 재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점 등록의 경우 또는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학점당 수업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29./2017.10.28./2018.8.4.)

제13조(휴학) ① 휴학하려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5.9.18./2017.1.26.)

② 휴학기간은 통산 2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8./2017.1.26.)

제14조(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특수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15조(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8.)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대학원장의 제정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3. 소정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11.8.29.)

제4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육과정, 수업 및 학점 (개정 2016.1.27.)

제17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개정 2013.6.27./ 2016.1.27.)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업연한을 최대 2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27/2017.10.28.)

1. 학기당 기준학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 (2014.11.7.)
2. 교류협정 등 특수한 경우
3.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한 연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특수대학원의 연관 전공으로 입학한 경우 (개정 2009.6.15./ 2013.2.13./2013.6.27./2014.11.7.)

제17조의2(재학연한) 재학연한은 두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제18조(수업 및 수업일수) ①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간과 주말 및 원격수업으로도 실시할 수 있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대학원의 수업은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0.28./2018.11.30.)

②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과 제2학기로 나눈다. (신설 2011.8.29.)

③ 1학기 개시일은 3월 1일, 2학기 개시일은 9월 1일로 한다. 다만,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신설 2011.8.29./2017.10.28.)

제19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각 특수대학원에서 편성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개정 2014.11.7)

- ② 각 특수대학원 학과장·전공주임교수는 서로 협의하여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7.10.28.)
- ③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간 연계교과목 및 학부·특수대학원 연계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 연계교과목은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20조(수료학점) ① 수료 학점은 2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치료대학원은 30학점, 음악치료대학원은 32학점, 원격대학원 음악치료학과는 30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8.4.21./2014.11.7./2016.1.27./2017.10.28.)

- ②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17.10.28.)
- ③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2]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충과목 이수) 특수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보충과목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생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놀이치료학과와 미술치료학과는 9학점, 임상음악치료학과는 9학점, 음악치료학과는 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08.4.21./ 2014.11.7./2017.1.26./2017.10.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수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재수강하는 과목의 학점만큼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9.6.15./2012.1.11)

제23조(타 대학원 학점인정) ① 국내·외 타 대학원 및 우리대학교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6학점(연계교과목 학점은 제외) 이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라도 제17조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 ③ 복수학위제 협정에 의하여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7.10.28.)

제5장 시험 및 성적

제24조(시험)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시험에 의한 평가를 행할 수 있다. 단, 과목에 따라서는 이를 별도로 부과하는 과제의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5조(학업평가 및 평점)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사향, 레포트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	97~100	4.3	B ⁺	87~89	3.3	C ⁺	77~79	2.3
A ⁰	94~96	4.0	B ⁰	84~86	3.0	C ⁰	74~76	2.0
A ⁻	90~93	3.7	B ⁻	80~83	2.7	C ⁻	70~73	1.7
						F	69이하	0.0

- ② 특수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평점 없이 P(합격) 또는 F(불합격)만으로 성적을 사정할 수 있다.(개정 2008.4.21)
- ③ 학위과정수료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인정 평점은 C-(1.7)이상 또는 S(합격)인 경우이며, 전체학기 평점평균은 B-(2.7)이상이어야 한다.
- ④ 성적불량으로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 ⑤ 보충과목 이수성적은 수료학점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제6장 학위수여

제26조(학위의 수여 및 종별) ① 특수대학원의 각 전공에서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일정시험과 학위논문심사(구술 시험 포함)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7.10.28.)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특수대학원별로 석사학위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특수대학원 위원회가 지정하는 교과목 6학점 추가취득자, 학위과제(졸업연주, 졸업공연, 졸업전시회, 인턴십, 클럭십 포함)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0.28.)

제27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논문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전체학기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
3. 일정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7.10.28.)
4.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제29조(논문심사) ①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은 교내·외 전공학과 또는 유관학과 교수나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하는 3인으로 하며, 심사결과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학위종류 및 학위기) (개정 2013.2.13.)

① 각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류는 [별표2]과 같으며, 전문분야를 표기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7.7.25.)

② 학위기는 [별지서식1]과 같으며 TESOL·국제학대학원 및 정원 외 외국인학생은 [별지서식1-1]과 같다. (개정 2017.10.28./ 2018.4.19.)

제7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31조(학생지도)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특수대학원장, 학과장, 전공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8.)

제32조(징계) ①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33조(장학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수여 원칙에 따라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1. 학업성적 우수자
 2. 초·중등학교 현직교사 및 현직 공무원
 3. 각종 교류협정에 의거 입학한 학생 (개정 2014.11.7)
 4. 특수대학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 (개정 2014.11.7)
 5. 그 밖에 특수대학원 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학생 (신설 2014.11.7)
-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4.11.7)

제8장 연구과정, 공개강좌 및 연구생 (장제목변경 2013.6.27.)

제34조(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조제목변경 2013.6.27.)

- ① 특수대학원에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정과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 ②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개설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특수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6.27)
- ③ 공개강좌는 원격강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연구생) ① 특수대학원은 전형에 의해 연구생을 선발할 수 있다.

- ② 연구생에게는 실적에 따라 [별지 서식3]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연구생의 전형 및 수업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8.29.)

제9장 특수대학원 직제

제36조(조직) 특수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교수구성) ① 각 특수대학원에는 단위 대학원별로 학과장과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개정 2017.10.28.)

- ② 학과장과 전공주임교수는 이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하여 제반 학사업무를 관장하며, 학생의 전공과제 지정, 기타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개정 2017.10.28.)

제10장 특수대학원위원회

제38조(위원회 구성) ①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장은 특수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일반대학원장, 기초교양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국제처장, 특수대학원장이 추천하는 단위대학원별 학과장 각1명 및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교내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0.11.12./2018.2.14./2018.11.9.)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2.14.)
-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9.12.14.)

제39조(위원회 기능) 특수대학원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공의 설치, 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제규칙·예규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0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조이름변경/조전면개정 2019.12.14) ① 위원장은 제39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메일을 이용한 회의의 경우에는 회신을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장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

제41조(위원회 구성) ① 원격대학원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항 번호 신설 2017.11.7.)

② 위원장은 원격대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기초교양대학장, 교수학습센터장 및 원격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전공주임교수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1./ 항 번호 신설 및 개정 2017.11.7./개정 2017.12.30.)

제42조(운영위원회 기능)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격대학원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2. 원격대학원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격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3조(위원회 소집) 원격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12장 보칙

제44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5조(시행세칙) 이 학칙시행을 위한 세칙은 특수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 시행 이전의 교육대학원학칙, 경영대학원학칙, 정책대학원학칙, 디자인대학원학칙, 임상약학대학원학칙, 국제관계대학원학칙, 음악치료대학원학칙, 정보통신대학원학칙, 전통문화예술대학원학칙, TESOL대학원학칙은 폐지하며, 각 특수대학원의 중전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② 이 학칙 제26조 2항은 1999학년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라도 휴학하여 1999학년도 이후 복학한 학생은 이 학칙을 적용 받는다.

제4조(원격대학원 학칙) 특수대학원 내에 설치되어있는 원격(원격향장산업,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의 학칙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원격(원격향장산업, 원격교육공학)대학원의 학칙은 이를 폐지하며, 중전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으로 인하여 폐지된 전공의 학생에게는 전공/전문분야/학위종별의 명칭을 종전 학칙의 명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제4조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전공/전문분야/학위종별의 명칭을 입학 당시의 명칭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개정 학칙은 2006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제4조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전공/전문분야/학위종별의 명칭을 입학 당시의 명칭을 적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제4조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변경 학칙 시행일 이전에 폐지되는 전공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대학원/전공/전문분야/학위종별의 명칭을 입학 당시의 명칭을 적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8조 제2항,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학칙 [별표 1]의 변경사항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에게 일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사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0조 및 제22조 중 원격대학원 음악치료전공 학기당 이수학점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 음악치료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5.9.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제1항 임상약대학원의 변경사항은 2010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5.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의 육아로 인한 휴학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별표2]의 개정 사항은 2018학년도 전기모집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0.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전환(변경)의 적용례) 2017학년도 이전 학칙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칙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에 따라 2018학년도 개편학제로 해당 소속(대학원·학과·전공)을 전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한 기일에 소속 전환(변경) 신청 및 동의서를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18년 3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하고, 학칙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과장의 적용례) 제19조, 제31조 및 제37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1조의 개정사항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0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후기 졸업생(2018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②의 개정사항은 2018 학년도 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1] 및 [별표2] ③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8.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8학년도까지의 학칙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칙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에 따라 2019학년도 국제관계학과의 개편학제로 해당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한 기일에 소속 변경 신청서를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19년 3월 1일자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18.11.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8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2.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1], [별표2]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2018학년도까지의 학칙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칙 제4조 [별표1]에 따라 2019학년도 개편학제(인적자원개발학과, 창의콘텐츠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변경 신청서를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특수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019년 3월 1일자부터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2019.4.1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9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7.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전기모집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1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각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전공), 입학정원(개정 2013.8.17./2013.10.26./2015.11.20./2016.5.18./2017.7.25./2018.4.19./2018.8.4./2019.2.15./2019.07.28)

과정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단위대학원	학과	정원	단위대학원	학과	정원	단위대학원	학과	정원
석사 학위	TESOL·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서비스학과 기후환경융합학과 TESOL학과	72	TESOL· 국제학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기후환경융합학과 TESOL학과	62	TESOL· 국제학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기후환경융합학과 TESOL학과	52
	문화예술 대학원	전통예술학과 라이프스타일디자인 학과 예술교육학과	121	문화예술 대학원	전통예술학과 라이프스타일디자인 학과 예술교육학과	121	문화예술 대학원	전통예술학과 라이프스타일디자인 학과 예술교육학과	131
	심리치료 대학원	놀이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52	심리치료 대학원	놀이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62	심리치료 대학원	놀이치료학과 미술치료학과	62
	인적자원 개발대학원	인적자원정책학과 커리어개발학과	56	인적자원 개발대학원	인적자원개발학과 커리어개발학과	56	인적자원 개발대학원	인적자원개발학과 커리어개발학과	56
	음악치료 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42	음악치료 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42	음악치료 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42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40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40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40
	원격대학원	향장미용학과 교육공학과 영·유아교육학과 실버비즈니스학과 음악치료학과 창의영재콘텐츠학 과	200	원격대학원	향장미용학과 교육공학과 영·유아교육학과 실버비즈니스학과 음악치료학과 창의콘텐츠학과	200	원격대학원	향장미용학과 교육공학과 영·유아교육학과 실버비즈니스학과 음악치료학과 창의콘텐츠학과	200
계	7개 대학원	19개 학과	583	7개 대학원	19개 학과	583	7개 대학원	19개 학과	583

※ 각 학년도 별 변경사항

- 2012학년도 2학기 : 국제관계대학원 인간안보및국제기구전공을 글로벌안보협력전공으로, 스포츠외교전공을 스포츠및공공외교전공으로 변경
- 2014학년도 1학기 : 국제관계대학원 스포츠및공공외교전공을 국제홍보및공공외교전공으로 변경
- 2016학년도 2학기 : 정책산업대학원 소비자경제금융전공 폐지, 임상약학대학원 임상약학전공을 약료경영전공으로 전공명칭 변경, 임상약학대학원 사회약학전공 폐지,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커리어상담전공 신설
- 2018학년도 1학기 : 학제개편에 따라 [별표1]의 학과로 변경
- 2019학년도 1학기 : 글로벌서비스학과 학제개편에 따라 국제관계학과로 변경
 TESOL·국제학대학원과 심리치료대학원 간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함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인적자원정책학과를 인적자원개발학과로, 원격대학원 창의영재콘텐츠학과를 창의콘텐츠학과로 변경

[별표2] 학과(전공)별 학위종별 및 전문분야 (신설 2017.7.25./개정 2017.10.28./2018.4.19./2018.8.4./2018.11.30./2019.2.15.)

① 2017학년도 입학생까지 적용하는 학위종별

과정	단위대학원	전공	학위종별	전문분야
석사 학위	정책산업대학원	문화예술행정전공	문화예술행정학 석사	문화예술행정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 석사	사회복지
		IT융합비즈니스전공	IT융합비즈니스학 석사	IT융합비즈니스
	라이프스타일디자인대학원	화예디자인전공	디자인학 석사	화예디자인
		미용예술전공	미용예술학 석사	미용예술
	임상약학대학원	약료경영전공	약학 석사	약료경영
	국제관계대학원	국제홍보및공공외교전공	국제학 석사	국제홍보및공공외교
		글로벌안보협력전공	국제학 석사	글로벌안보협력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전공	문화매니지먼트학 석사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
		기후환경융합전공	기후환경학 석사	기후환경융합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전공	음악치료학 석사	임상음악치료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무용전공	문화예술학 석사	전통무용
		전통음악전공	문화예술학 석사	전통음악
		전통식생활문화전공	문화예술학 석사	전통식생활문화
	TESOL대학원	TESOL전공	TESOL석사	TESOL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	놀이치료학 석사	놀이치료
		유리드믹스전공	유리드믹스학사	유리드믹스
		피아노페даго지전공	피아노페даго지학 석사	피아노페даго지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인적자원개발전공	인적자원개발학 석사	인적자원개발
		리더십교육전공	리더십교육학 석사	리더십
		커리어상담전공	상담학 석사	커리어상담
	원격대학원	향장미용전공	향장학 석사	향장미용
		교육공학전공	교육학 석사	교육공학
		영·유아교육전공	유아교육학 석사	영·유아교육
		실버비즈니스전공	실버비즈니스학 석사	실버비즈니스
		아동문화콘텐츠전공	아동문화콘텐츠학 석사	아동문화콘텐츠
		음악치료전공	음악치료학 석사	음악치료
창의교육비즈니스전공		창의교육예술학 석사	창의교육비즈니스	

②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및 소속 전환(변경)자에게 적용하는 학위종별

과정	단위대학원	학과	세부전공	학위종별 (전문분야)
석사 학위	TESOL ·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서비스학과	국제홍보·공공외교전공	국제학 석사 (국제홍보·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전공	국제학 석사 (국제개발협력)
		기후환경융합학과	기후환경학전공	기후환경학 석사 (기후환경학)
		TESOL학과	TESOL전공	TESOL 석사 (TESOL)
	문화예술대학원	전통예술학과	전통무용전공	예술학 석사 (전통무용)
			전통식생활문화전공	문화예술학 석사 (전통식생활문화)
			전통음악전공	예술학 석사 (전통음악)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화예디자인전공	예술학 석사 (화예디자인)
			뷰티디자인전공	예술학 석사 (뷰티디자인)
		예술교육학과	유리드믹스전공	예술학 석사 (유리드믹스)
		피아노교수학전공	예술학 석사 (피아노교수학)	
	심리치료대학원	놀이치료학과	놀이치료전공	심리학 석사 (놀이치료)
		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심리학 석사 (미술치료)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인적자원정책학과	인적자원개발전공	인적자원개발학 석사 (인적자원개발)
			조직컨설팅전공	인적자원개발학 석사 (조직컨설팅)
		커리어개발학과	리더십교육전공	교육학 석사 (리더십교육)
		커리어상담전공	상담학 석사 (커리어상담)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임상음악치료전공	음악치료학 석사 (임상음악치료)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문화정책전공	행정학 석사 (문화정책)
			예술경영전공	행정학 석사 (예술경영)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전공	경영학 석사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 석사 (사회복지)
	다문화정책전공		사회복지학 석사 (다문화정책)	
	원격대학원	향장미용학과	향장미용전공	향장학 석사 (향장미용)
			뷰티케어전공	향장학 석사 (뷰티케어)
		교육공학과	교육공학전공	교육학 석사 (교육공학)
		영·유아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교육학 석사 (영·유아교육)
		실버비즈니스학과	실버비즈니스전공	경영학 석사 (실버비즈니스)
음악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음악치료학 석사 (음악치료)	
창의영재콘텐츠학과		창의영재콘텐츠전공	인문학 석사 (창의영재콘텐츠)	

③ 2019학년도 입학생 및 소속 전환(변경)자에게 적용하는 학위종별

과정	단위대학원	학과	세부전공	학위종별 (전문분야)
석사 학위	TESOL·국제학대학원	국제관계학과	국제홍보·공공외교전공	국제학 석사 (국제홍보·공공외교)
		기후환경융합학과	기후환경학전공	기후환경학 석사 (기후환경학)
			환경·경제전공	기후환경학 석사 (환경·경제)
	TESOL학과	TESOL전공	TESOL 석사 (TESOL)	
	문화예술대학원	전통예술학과	전통무용전공	예술학 석사 (전통무용)
			전통식생활문화전공	문화예술학 석사 (전통식생활문화)
			전통음악전공	예술학 석사 (전통음악)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화예디자인전공	예술학 석사 (화예디자인)
			뷰티디자인전공	예술학 석사 (뷰티디자인)
		예술교육학과	유리드믹스전공	예술학 석사 (유리드믹스)
	피아노교수학전공		예술학 석사 (피아노교수학)	
	아동예술교육전공		교육학 석사 (아동예술교육)	
	심리치료대학원	놀이치료학과	놀이치료전공	심리학 석사 (놀이치료)
		미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심리학 석사 (미술치료)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인적자원개발학과	인재개발전공	인적자원개발학 석사 (인재개발)
			조직컨설팅전공	인적자원개발학 석사 (조직컨설팅)
		커리어개발학과	리더십교육전공	교육학 석사 (리더십교육)
			커리어상담전공	상담학 석사 (커리어상담)
	음악치료대학원	임상음악치료학과	임상음악치료전공	음악치료학 석사 (임상음악치료)
	정책대학원	문화행정학과	문화정책전공	행정학 석사 (문화정책)
			예술경영전공	행정학 석사 (예술경영)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전공	경영학 석사 (프랑스문화매니지먼트)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 석사 (사회복지)
	다문화정책전공		사회복지학 석사 (다문화정책)	
원격대학원	향장미용학과	향장미용전공	향장학 석사 (향장미용)	
		뷰티케어전공	향장학 석사 (뷰티케어)	
	교육공학과	교육공학전공	교육학 석사 (교육공학)	
	영·유아교육학과	영·유아교육전공	교육학 석사 (영·유아교육)	
	실버비즈니스학과	실버비즈니스전공	경영학 석사 (실버비즈니스)	
	음악치료학과	음악치료전공	음악치료학 석사 (음악치료)	
창의콘텐츠학과	창의콘텐츠전공	인문학 석사 (창의콘텐츠)		

석제 호

학 위 기

○ ○ ○
년 월 일생

학과 (전공) :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전문분야 :)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학 석사(전문분야 :)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학위명) ○ ○ ○ (인)

학위번호 : 숙명여대 (석) _____

Sookmyung Women's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of
Graduate School of TESOL and International Studies
has conferred upon

○ ○ ○

in recogni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the degree of

Master of TESOL
(specialization in TESOL)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pertaining.

The date.

○ ○ ○ . Ph.D.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TESOL and International Studies

○ ○ ○ . Ph.D.

President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문서확인번호 :

수 료 증 명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소 속:
학 과 (전공):
입 학 년 월 일:
수 료 년 월 일: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석제 호

증명서

성명 ○ ○ ○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